

[기획]

퍼펙트 論述

분배 문제에 대한 고찰

(공리주의와 정의론을 중심으로)

사회정의의 위한 공평한 분배는 가능한가

실전 연습

(가)에 나타난 분배 방식이 가진 의의를 밝히고, 그것의 한계를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논하시오.

(가) 사과와 초콜릿을 절반씩 바른 빵을 A와 B가 나누기로 한다. 빵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① 사과와 초콜릿 중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는다.

② A가 빵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③ B가 두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남은 부분은 A가 가진다.

(나) 자유주의적 입장이 분명히 자연적 자유 체제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결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한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점을 허용하고 있다.

배우의 제도가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는 배분의 몫이 천부적 배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인 것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의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짐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기회 균등의 원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천부적 능력이 개발되고 성숙하는 정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계급 양태에 영향을 받는다. 노력하고 힘쓰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값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의존한다. 실제로 있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기능과 교양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또한 천부적인 운수 자체가 갖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입장이 여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찾게 되는 것이다.

- J. 롤스, 『정의론』

1. 무엇이 정의(正義)인가?

① 지리와 자연적인 경계를 고려하여 30호(戶) 정도로 여(閭)를 만든다.

② 여(閭) 안의 토지는 여민(閭民)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작한다.

③ 공세(公稅)와 여장(閭長)의 봉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여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

위 지침은 조선 후기 중농주의 실학자 정약용이 구상한 '여전론(閭田論)'의 골자이다. 백전 지배층이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에서 정약용의 여전론은 공동 경작과 공동 분배를 통해 농민의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려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오늘날의 분배 논쟁과 관련하여 여전론을 바라본다면, 적어도 '농사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에 따른다'는 여전론의 분배 방식이 커다란 함정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

예컨대, 노동 집약적인 농업의 특성상 노약자는 건장한 장정의 생산력을 따라가기 어려우므로, 공동 경작 활동에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여'의 범위를 아무리 넓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1차적인 노동력의 투여를 대체할 만한 별도의 생산 활동이 없다면 노약자가 다수인 가구는 공평한 생활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정약용의 여전론은 '공평'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정의'롭다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 '정의'만큼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개념도 드물다. 우리가 막연하게 '옳음'을 정의로 생각한다면, 또 다시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기준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는 제도 혹은 법을 내세웠고, 그조차도 '실정법 안에서 지켜지는 인간사회의 관습적인 질서'인 '자연법을 포함하는 형식사회의 질서'인지를 대한 논란이 분분하게 이어졌다. 이는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판단이 이론적·보편적



박은경

1318는술연구소
언어는술 강사

동영상 강의
www.1318hi.com

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인간의 의사와 감정,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합리주의적 사고 방식이 널리 확산된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몫'에 대한 요구로 인해 사회 내 생산물의 분배 문제가 중요해졌고 상대적으로 '분배적 정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분배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 예컨대, 부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100만 원과 가난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100만 원의 가치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 후자의 가치가 더욱 크다고 여기는 인식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만일 두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같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수량적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정의에 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공리주의

노조의 파업이나 집회·시위를 다루는 사건에서 그로 인한 생산량 및 매출 감소, 지연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며 자제를 당부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이때 신문기사의 주장 근거는 금전으로 환산된 사회적 비용이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과 그로 인해 보장되는 노동권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양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행복의 유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벤담)

공리주의의 대표자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고전학과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받아들여 인간의 행동이 모두 예측 가능하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 원리를 쾌락을 통해 설명하며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쾌락과 고통을 일곱 가지 관점[강도, 지속성, 발생의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多産性: 같은 종류의 감각이 뒤따를 가능성, 순수성(반대 종류의 감각이 뒤따를 가능성), 범위]으로 나누어 수치화하여 계량하기도 했다. 한편 벤담(John Stewart Mill, 1806~1873)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여 벤담의 사상에 수정을 가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만족한 인간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곤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증대되는 쾌락의 질은 상류층의 부의 증대에 의해 증대되는 쾌락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쾌락의 질적 차이를 결정짓는 또 다른 원리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결국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 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행위의 합리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행복을 계산하는 만큼, 공리주의는 일견 평등주의를 반영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행복의 총량을 증시할 뿐 누가

얼마의 행복을 누리려는가는 중시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행복 감소는 다른 사람의 행복 증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행복 증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문제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가 발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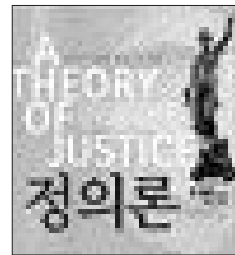
그 후 공리주의의 기본 이념을 유지하되 행위의 결과 이외에도 과정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공리주의적 분배 원칙이 등장하게 된다. 3명 이내의 소수자가 참여하는 '케이크 자르기 모델'과 4명 이상의 다수가 참여하는 '경매 모델'을 살펴보자. 2명이 케이크를 자르는 경우 한 사람이 케이크를 2개로 자르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중 자신이 선호하는 1조각을 선택한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분배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3명이 자를 때에는 한 사람이 케이크를 3등분하고, 다른 한 사람이 비용을 면서의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배럴하며, 마지막 사람이 케이크 조각을 선택함으로써 먼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다수가 참여하는 분배 과정에서는 경매 모델이 유용하다. 다만,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느 재화에 다수의 입찰자가 생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그 재화를 분배한다. 낙찰된 사람은 자신의 선호를 만족했으며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낙찰에 실패한 사람들도 다른 재화에 대한 경매에서 비용 면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이처럼 공리주의적 분배 원칙은 자신의 선호나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분배 절차에 모든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기에 분정의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장치를 여전히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자 보호를 외면하는 공리주의의 한계를 여전히 답답하게 된다.

3. 롤스의 정의론

자유 시장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에서의 분배를 정의로운 분배로 간주한다. 예컨대 명문대 진학은 성별과 재산, 연령이나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고 능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류층 출신이라 하여 부와 권력을 얻는 길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자유주의 이념이 실력력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롤스의 '정의론')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도농 간의 교육 격차나 값비싼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 현실에서 불우한 학생의 명문대 입학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또한 재벌의 무리한 경영권 승계 노력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부의 세습이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물의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천부적인 운에 의해 부나 소득이 배분됨으로써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타고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 환경과 사회적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지만, 저마다의 성장 환경은 우열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출발점의 조건 자체를 평등하게 하지 못하는 한 '능력에 따른 분배'는 오히려 불평등을 낳을 뿐이므로, 결국 애초부터 불리한 사회적 약자의 처우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등의 원리'라 불리는 정의론의 제2원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때에만 정당화된다(수혜의 원칙). 그리고 동일한 능력과 재능,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자기 선택한 분야에서 동일한 성공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예컨대 빈곤층을 위해 빈곤층의 의료 보험료를 낮추는 반면, 부유층의 의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허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의 원리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재산 갈취를 인정하거나 부유층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이 경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도 이 같은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롤스는 차등의 원리에 앞서서 '자유 우선성의 원리(평등한 자유의 원리)'를 정의론의 제1원리로 설정했다. 즉, 정치적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비록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도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담보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롤스의 주장을 현실로 적용하는 데에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역차별' 문제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대한 특별한 보호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근로 의지가 없는 노숙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고 건전한 경제 관념을 위협할 수 있다. 여성 고용 할당제가 능력 있는 다수의 남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앗아간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자본보다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즉 일자리 창출이나 직업 훈련 등을 통한 '일하기 위한 복지'를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 개념의 활용이 더욱더 필요해진 것도 이러한 현실의 반영임을 염두에 두자.

합동법률경제 (광주지방법원 앞) 433-7798 H.P. 011-1770-3328

LC타워(주) 972-8004, 010-7154-6986

일가공인중개사 234-8216 011-608-0896

대인동심일부동산 223-1140, 010-802-2522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525-0021, 011-612-3421